

()

()

1 【 】

(請約) (承諾)

.()
 , 가
 , 15
 , 1
 (" ")
 (" ")
 , 30
 . 30
 가 .

2 【 】

. ()
 1. 가 3 () 1 ()
 1 () 2() 6
 (가)
 2. 가
 1 . ()

3 【 】

1 가
 1 . (1
 " " ,
)
 가 1
 가
 2 가

1. 11 (가) 가

2. 11 (가) 1
가 가

가 가 1 가

3 2 【 가 】
()가
(,) (

4 【 가 1 】
, 가
3 가 1
가
+1%

4 2 【 가 1 】
가 1
가 3
2

5 【 가 】
()
7 () 1
1 , 2 4

5 2 【 가 2 】

가 2

1

1 가

가

가

1

가 2

6 【 가 】

가

1.

2. 15
神薄弱者)

(心神喪失者)

(心

7 【 가 】

가

가

(1

)

1.

가

:

2.

가

1

가

:

3.

가

1

4.

가

가

2

6

가

가

가

27 () 2

가

1 3
180

4

180

가

1 가
1 가 1 3 4
가 1 4 가 가
가 5 가
2 가
가 가
5 가
가 6 가 가
가 6 가
1. 가
2. 가

8 【 】 가

9 【 】
가

1. 가
, 가 () 2

1 가
2. 가
,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0 【 , 】

1 가 6 가 가
가 가

11 【가 】

(
)
3 () ,

가
1

, 가

1. 가

2. 가 1 가 2
(1)

3. 가 (가)
(가)
)

4. (가
)

2

2 가

(가)

가

1

가

12 【 】

가 2

(110 ())

가

가

가
가

5 (1

)

13 【 】

2

가

, () 가

가

12

14 【 】

7 ()

가

15 【 】

가

1

가

가

16 【 】

가 2

3

가

가
1 3 , 가
2 15 가
()
가
() 15
17 【 】
16 ())
2 가 (復
活) , 가
가
가
3 (), 4 ()
11 (가)

18 【 】

1. ()
2. (,)
- 3.
4. ()
5. 가
1 2
, 3 () 2
가

19 【 】

18 ())

10

11 (가)

1

「6.5%」, 2

1

「× 90%」

「× 80%」, 3

(, 2

), 3

4

1

, 3

가

1

가

7

가

가

1

+1%

20 【 】

()

7 () 1 2

3

19 ()

1

)

+1%

21 【 】

1.

2.

3.

가 1 1

(가) 4
 가 1 2
 가

22 【 】

23 【 】

가

1

가

10

24 【 】

1. ,
2. ,
3. 가 ,

25 【 】

26 【 】

27 【 】

가

28 【 】

가

(1)

(7 1 1)

	가

(7 1 2)

	가 1
가	
	100 +

(7 1 3)

	가 1 가
	500 +

(7 1 4)

	가 2 6 가
	2 : 350 3 : 250 4 : 150 5 : 75 6 : 50

() 「 」 「 」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1995. 1.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등급	신 체 장 해
제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 하였을 때
제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4급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5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 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분류해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애인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애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 장애, 안구운동 장애, 조절 장애,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 (컷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가 결손 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애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sum \frac{\text{운동종류별 장애후 운동범위}}{\text{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text{비례치}$)이 1/20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애
 -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첫째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기타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애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애 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A M A		
				(%)
		30 30	60	-
		40 40	80	-
		30 30	60	-
		90 30	120	-
		20 20	40	-
		30 30	60	-
	{ }	40 150	190	50%
		40 90	130	20%
	()	150	150	30%
		0 150	150	60%
		80 80	160	40%
		60 70	130	70%
		35 45	80	30%
		30 100	130	33%
		20 40	60	33%
		40 50	90	33%
		0 150	150	100%
		20 40	60	70%
		35 25	60	30%

- : 가 가
 - : 가
 - : 가
 - : 가

1 【 】

() , 가 . ,

() 90 ,

 6 () 가 ,

 가 가 .

2 【 】

3 【 】

1. .
2. 15 ,
3. 가 5 ,
- 1 () 2 ,
- 가 ()
- 1 1 3
- 5 가 가
- 가 .

4 【 】

(1)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1 C44 (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

가 , (fixed tissue)
(hemic system)

가

가

가

5 【 】

(2

)

가 , (fixed tissue)
(hemic system)

가

가

가

6 【 】

가 가
()

1.

가 1 () 2	가 50% (1)
가 1 () 2	가 20% (1)

2.

가 1 () 2 , 3 1 가	가 100%

1 () 2

1

7 【 가 】

가

가

180

가
1

가

8 【 가 】

9 【 가 가 】

가 가

가

1 2

가 가 , 가

가

14 【 】

1

15 【 】

가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 보험기간 : 7년, 10년 만기
— 가입연령 : 40세
— 납입방법 : 전기월납

구 분		남 자		여 자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7 년 만 기	1 년	216	0	216	0
	3 년	648	78	648	0
	5 년	1,080	103	1,080	26
	7 년	1,512	0	1,512	0
10 년 만 기	1 년	252	124	228	76
	3 년	756	293	684	136
	5 년	1,260	380	1,140	158
	7 년	1,754	356	1,596	136
	10 년	2,520	0	2,280	0

(1) _____

3
(1993-3 , 1995.1.1)

1. ,	C00-C14
2.	C15-C26
3.	C30-C39
4.	C40-C41
5.	C43-C44
6.	C45-C49
7.	C50
8.	C51-C58
9.	C60-C63
10.	C64-C68
11. ,	C69-C72
12.	C73-C75
13. ,	C76-C80
14. ,	C81-C96
15. ()	C97

(2) _____

3
(1993-3 , 1995.1.1)

1.	D00
2.	D01
3.	D02
4.	D03
5.	D04
6.	D05
7.	D06
8.	D07
9.	D09

(3) _____

1	1. 2. 3. 4. . 5. 6. 7. , 8. , 9. ,

()

1. 가 가
가.

. 가 가 가
- 가 가 가 (A.M.A)
- 가 4
, ' A.M.A.

2. (,)가

- (1)
- (2)
- (3)
- (4)
- (5)

3. , (2) (5) 2 (1)
, (1)

4. 0.02

. 가 ,

5. 가.

1) (ㄴ, ㄷ, ㄹ), (ㅈ, ㅊ), (ㅁ, ㅂ, ㅍ),
가 (ㅇ, ㅎ) 3

2) 가

3) 가

()

6. 가 .
 ' ' 가 3 (') ,
 (가) .

7. 가 .
 . 가
 . 가

*

.

- 1. 가
- 2. 가 , 가
- 3. 가

- 1. 1 1
- 2. 1 2 3

5 【 1 3 】

- 1
- 1 2

1

6 【 1 2 】

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復活)

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1. ()
- 2. (,)
- 3.
- 4. ()
- 5. 가 1 2

, 3^2
 가

9 【 】
 8 () 3
 , ,
 10
 1

10 【 】
 , .
 가 가 가
 , 가
 . 가

11 【 】
 , .
 1

12 【 】
 .
 가

(1) _____

1	100% 가

(2) _____

() 2()

(3) _____

3()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을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4조("휴일"의 정의)에 정한 "휴일"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2.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 ②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 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한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애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애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⑨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제4조 【 휴일 의 정의】

이 특약에서 휴일 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 “해

약환급금 예시표"참조)

④ 제3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2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휴일 재해 사망 보험금 (약관 제3조제 1항 제1호)	피보험자가 특약 의 보험기간 중 약관 제4조(휴 일의 정의)에 정한 휴일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												
휴일 재해 장애 급여금 (약관 제3조제 1항 제2호)	피보험자가 특약 의 보험기간 중 약관 제10조(휴 일의 정의)에 정한 휴일에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기준:특약보험 가입금액) <table border="1" data-bbox="754 976 1007 1189"> <thead> <tr> <th>장애등급</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2급</td> <td>70%</td> </tr> <tr> <td>3급</td> <td>50%</td> </tr> <tr> <td>4급</td> <td>30%</td> </tr> <tr> <td>5급</td> <td>15%</td> </tr> <tr> <td>6급</td> <td>10%</td> </tr> </tbody> </table>	장애등급	지급액	2급	70%	3급	50%	4급	30%	5급	15%	6급	10%
장애등급	지급액													
2급	70%													
3급	50%													
4급	30%													
5급	15%													
6급	10%													

(2) _____

() 2()

(3) _____

() 3()

(2) _____

()

1.		A00 - B99
2.		C00 - D48
3.		D50 - D89
4.	,	E00 - E90
5.		G00 - G99
6.		H00 - H59
7.		H60 - H95
8.		I 00 - I 99
9.		J00 - J 99
10.		K00 - K93
11.		L00 - L99
12.		M00 - M99
13.		N00 - N99
14.	,	O00 - O99
15.		P00 - P96
16.	,	R00 - R99
17.	,	S00 - T98
18.		V01 - Y98
	1 1	
		2

()
1. (,)

2.

3. ,

4. ,

5. , (-
) , ,

(3) _____
() 2()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 보험기간 : 7년, 10년 만기
 { 가입연령 : 40세
 { 납입방법 : 전기월납
 { 3일 초과 입원시 보장의 경우

구 분		남 자		여 자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7 년 만 기	1 년	300	35	300	36
	3 년	900	75	900	75
	5 년	1,500	65	1,500	65
	7 년	2,100	0	2,100	0
10 년 만 기	1 년	324	51	324	51
	3 년	972	125	972	125
	5 년	1,620	156	1,620	156
	7 년	2,268	138	2,268	138
	10 년	3,240	0	3,240	0

()

()

1 【 】

(請約)

(承諾)

.() ,
 , 가)
 , 15 1 .
 , 1
 (" ")
 , 30 (" ")
 . 30 ,
 가 .

2 【 】

. ()
 1. 가 3
 (1 ()) 1 2(1)
 6 가) 2
 2. 가
 1 . ()

3 【 】

1 1 가
 1 1 . ()
 1 " " ,
) 1
 가 가 1
 2 가

1. 11 (가) 가

2. 11 (가) 1
가 가
가

가 가 1 가
가

3 2 【 가 】
()가
(,) ()

4 【 가 1 】
가 1 , 가
3 가 1
가
+1%

4 2 【 가 1 】
가 1
가 3
2

5 【 가 】 ()

1 7 () 1
2 4

5 2 【 가 2 】 1

1 가
가 가 1
가 2

6 【 가 】

1.

2. 15 (心神喪失者) (心
神薄弱者)

7 【 가 】

가 가 (1
)
1. 가 :
2. 가 1 가
3. : 가 2 6
가 가 :

27 () 2

가

1 3 180
180

가

1 가
 1 가 1 2 3
 가 1 3 가 가
 1 3 가
 가
 5 가
 2 가
 가 가
 5 가
 가 6 가
 가 6 가
 1. 가
 2. 가
8 【 】 가
9 【 】
 가
 1. 가 , 가 ()
 2 1 가
 2. 가 ,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0 【 , 】

가 , 6 가 가 가
1 가 가

11 【가 】

()
()
, 3

가
1

, 가

1. 가

2. 가 1 가 2
() 1)

3. 가 (가)
(가)
)

4. (가)
)

2

2 (가
) (가 가
가

1 가

12 【 】

2 (가 1)
110 () 가 ,

가 가 5 ()
1)

13 【 7 () 가
】

14 【 가
1 가 가
】

15 【 】

1. ()
2. (,)
3.
4. ()
5. 가
1 2
, 3 () 2
가

16 【 18 ()
】

3

10

11 (가)

1

1

「6.5%」, 2 「 × 90%」, 3 「 × 95%」 (, 2), 3 「

4

1

, 3

가 1

가

7

가

가

1

+1%

17 【 】

()

7 ()) 1 2

16

()

1

(

)

+1%

18 【 】

1.

2.

3.

가 1 1

(가 1 가) 4 2
가

16

19 【 】

20 【 】

가

1

가

10

21 【 】

1.

2.

3. 가 ,

22 【 】

23 【 】

24 【 】

가

25 【 】

가

26 【 】

(1)

(7 1 1)

	가

(7 1 2)

	가 1 가
	10% +

(7 1 3)

	가 2 6 가
	2 : 7.0 % 3 : 5.0 % 4 : 3.0 % 5 : 1.5 % 6 : 1.0 %

() 「 」
」

「

(2) _____

() 2()

(3) _____

() 3()